

서울특별시 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162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9년 10월 16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'서울핀테크랩 운영'은 금융혁신을 이끄는 유망 핀테크 기업을 육성하고 핀테크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함으로써 서울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최대 규모로 조성되는 서울핀테크랩을 운영하는 사업으로,
- 나.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 및 국내외 핀테크 기업간 기술교류, 민관 교류협력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전문지식, 인적·물적 네트워크를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함
- 다.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적정성 심의 결과, '적정'으로 의결되어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사업명 : 서울핀테크랩 운영
- 나. 위탁기간 : 2년 (2020.4.~2022.3.)
- 다. 소요예산 : 1,400백만원('20년 예산)
- 라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

마. 위탁사무내용

- 서울핀테크랩 입주기업 모집·관리, 시설 및 장비 운영, 홍보
- 전문 멘토링, 특화 교육 프로그램, 데모데이, 금융기관 네트워킹
- 해외 투자설명회(IR), 해외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연계로 입주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
- 민간 지원기관 협업을 통한 '핀테크 허브' 구축
-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위원회 지원 정책 협력 등

바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

- 추진근거
 -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
-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 - '서울핀테크랩 운영'은 국내 최대규모로 조성되는 서울핀테크랩을 관리하고 입주기업들을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,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핀테크 관련 경험 및 역량이 축적된 전문적인 법인 및 단체에 위탁 운영 필요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9.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

나. 예산조치 : 2020년 민간위탁금 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경제정책과 금융산업팀 김태동 (☎ 2133-5241)